

안녕하십니까?

본 지면을 빌어 저희 가정 참여 지원실에서 그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뉴욕시 교육청 산하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CCELL)가 드디어 2010년 5월에 첫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결성과 관련해 신규 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차원의 영어학습학생 위원회가 창설되어야 한다. 시 전체 차원의 영어학습학생 위원회는 투표권을 가진 11명의 위원과 투표권이 없는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I) 투표권을 가진 9명의 위원은 자녀가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중에 선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들이 교육감이 지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당해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II) 투표권을 가진 2명의 위원은 뉴욕시 공익 옹호실(Public Advocate of the City of New York)에서 영어학습학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으며, 그간 뉴욕시의 이중언어 교육 및 ESL 프로그램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한 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한다. 이러한 위원의 임기 역시 2년으로 한다;
- (III) 투표권이 없는 1인의 위원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서 현재, 또는 과거에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속해있던 학생으로서 교육감이 이들 프로그램을 감독하도록 지명한 행정관리자에 의해 지명된다. 이러한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CCELL)는 관리법에 의거해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교육 또는 학습 정책에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매년 뉴욕시 학군의 영어학습학생 서비스 효율성에 관한 연례 보고서(및 해당될 경우 이러한 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및 제공방법에 관한 권고안)를 발행합니다.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 설립절차는 현재 발의된 [교육감 규정 D-170](#)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밑줄 부분을 클릭하시면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립된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CCSE) 신규 위원 선출 역시 2010년 5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규 관리법에 의하면 당 위원회는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을 가진 학생(즉,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들에 의해, 일반 학군 및 제 75 학군 모두에서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을 가진 학생들의 학부모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IEP를 가진 학생의 학부모들 중에서 자녀가 일반 지역 학군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님들도 이제는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규 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차원의 특수교육 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투표권을 가진 11 명의 위원과 투표권이 없는 1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표권을 가진 9 명의 위원은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을 가진 학생의 학부모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개별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학생(이러한 서비스를 받는)의 학부모들에 의해 교육감이 지정한 절차로 선출된다. 이렇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2. 투표권을 가진 2 명의 위원은 뉴욕시 공익 옹호실(Public Advocate of the City of New York)에서 장애인의 교육과 훈련, 취업에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으며, 그간 뉴욕시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상당한 공헌을 한 인물 중에서 지명한다. 이러한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3. 투표권이 없는 1 인의 위원은 개별교육 프로그램[서비스를 받는]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 12 학년 학생으로서 교육감이[뉴욕시 차원의]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할 임무를 부여한 행정관리자에 의해 지명된다. 이러한 위원의 임기는 1 년이다.”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CCSE)는 관리법에 의거해 장애학생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교육 또는 학습 정책에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매년 뉴욕시 학군의 장애학생을 위한 서비스의 효율성에 관한 연례보고서(및 해당될 경우 이러한 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및 제공방법에 관한 권고안)을 발행합니다. 또한 CCSE 에서는 각 지역학군 내 특수교육 위원회 및/또는 하부위원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 설립절차는 현재 발의된 [교육감 규정 D-170](#) 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밑줄 부분을 클릭하시면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CCSE](#)) 관련 지침 및 시행방안을 명시한 현재 발효 중인 규정을 보시려면 본 문장 중의 밑줄 친 “CCSE” 부분을 클릭하십시오.

각 지역학군 내 교육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영어로 된 상세한 설명을 검토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한편, 올 봄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학부모회(PA)/학부모 교사회(PTA)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선거는 5 월과 6 월 사이 실시됩니다.

뉴욕주법에 의거해, 뉴욕시 각 공립학교에서는 반드시 학부모회(PA) 또는 학부모 교사회(PTA)를 두어야 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뉴욕시 특수교육 및 대안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있는 PA/PTA에는 가정참여 지원실(OFEA)로부터 관련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정의:

- A. 학부모회(Parent Association: PA)는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에 의해 투표로 선출, 설립된 단체로서 조례 및 선출 임원을 두고 정규 회의를 개최하며 구성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유도하는 집단이다.
- B. 학부모-교사회(Parent-Teacher Association: PTA)는 PA의 학부모 회원들이 세칙 개정안을 투표로 통과시켜 단체 참여자격을 교직원까지 확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각 협회는 회장, 서기 및 회계를 선출합니다. 5 월에서 6 월 사이에 있을 선거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께서서는 해당 학교의 현 집행위원회에 문의하시거나 가정참여 지원실(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에 전화 (212) 374-2323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PA/PTA 선거는 각 학교에서 실시되며, 후보 지명 위원회의 지명 절차, 또는 올 해 7 월 1 일부터 다음 해 6 월 30 일까지 해당 학교를 대표할 집행위원회 임원을 선출할 목적으로 소집된 연례 회의 현장에서 직접 후보를 지명 받는 방식의 후보지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 안내문을 통해 학부모님들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기를 바라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활동에 참여하시고 다양한 학부모 단체에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공립학교와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Martine Guerrier
뉴욕시 교육청
수석 가정지원 담당관(Chief Family Engagement Officer)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

가정참여 지원실(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49 Chambers Street, Rm. 503
New York, NY 10007